

租稅回避 關聯要素에 관한 行動的 研究*

On Tax Evasion Judgements : An Experimental Approach

全 泰 榮**

논문 초록

본 연구소에서 우리나라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조세회피에 대한 성향을 분석하고 있다. 납세자들의 성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조세정책은 고소득자의 조세회피 문제에 초점이 두어져야 하며, 富의 정당성이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소득세율의 인상문제는 세원포착율의 증가와 함께 신중히 다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공정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납세자들의 거부감은 조세회피 문제에 있어 경제적 요인들보다 더 강력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 序 論

세금이란 직접적인 反對結付없이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또는 재산의 거래에 관하여 정부가 강제적으로 徵收해가는 부분을 말한다. 납세자들이 자신에게 부과된 소세의무를 잘 준수하는가 하는 문제는 세무행정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장기간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으나 최근에 이 문제가 일반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근로소득의 초과징수문제, 과세되지 않는 소득의 확산, 그리고 地下經濟의 엄청난 탈세규모등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美國國稅廳(Internal Revenue Service : 이하 “IRS”로 부르기로 한다.)의 추계로는 1981년 租稅回避로 인한 전체적인 세금수입의 결손은 900억 \$을 초과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1981년

* 이 연구는 1990년도 문교부 지원 학술진흥재단의 지방대 육성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慶尙大學校 社會科學大學 會計學科 助教授

미국의 財政赤字 579억 \$ 보다 많은 금액이다. 1973년부터 1981년까지 조세회피의 증가속도는 평균 14%에 이르고 이것은 같은 기간동안 미국의 GNP평균증가를 10%를 초과하는 것이다 (Witte & Woodbury 1985). 이 수치는 1985년에는 1,350억 \$로 추산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세회피의 문제는 세계각국이 안고있는 공통적인 문제이다. 스웨덴의 경우 설문조사 응답자의 80-90%가 조세회피가 심각한 문제라고 답변하고 있다 (Vogel 1974). Mork는 노르웨이의 所得資料를 사용하여 납세자들이 실제로 큰 규모의 조세회피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Mork 1975). 프랑스나 이탈리아같은 남부유럽국가들에서는 세법의 준수를 촉구하기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조세회피를 스포츠의 한 종류도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稅法의 준수의식은 대단히 낮다고 한다. (Jackson & Milliron 1968) 우리나라는 국세청에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납세자들은 勤勞所得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단히 낮은 自營所得 및 資本利得(Capital Gain)의 세금부담 및 조세회피 문제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다.

조세회피가 深化되게되면 여러가지 사회적 역기능을 초래하게 된다. 먼저 정부의 세금수입이 원활히 조달되지 않으면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정부는 公共材(Public Goods)의 공급에 원활을 기할 수 없다. 조세회피가 야기하는 또다른 문제는 公平性의 문제로서 이것은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에 관련되어 있다. 즉 동일한 소득이나 재산을 가진 사람이 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水平的衡平의 原理(The Principle of Horizontal Equity)는 조세회피행위에 의해서 깨어지게 된다. 더 많은 소득이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垂直的衡平의 原理(The Principle of Vertical Equity)도 조세회피행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고소득집단의 소득이 稅源捕捉이 어렵고, 따라서 보다 광범위한 조세회피가 이러한 소득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 소득세의 累進效果가 감소된다면 조세회피행위가 垂直的衡平도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납세자들의 租稅回避性向(propensity to evade)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다. 부차적으로는 조세회피 행위자에게 規制가 행해질 때, 규제에 대한 納稅者의 反應을 연구하는 것과 조세회피 규제방안의 한가지인 罰則(penalties)의 적절한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알아보는 것이 포함된다. 부차적인 목표는 주된 목표인 조세회피성향에 대한 연구의 유용성을 보다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조세회피성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현상에 대한 대처방안에 도움이 되는 연구가 마땅히 있어서야 할 것

이기 때문이다.

租稅回避性向은 여건만 주어지면 바로 조세회피라는 행동으로 나타날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중요한 변수를 관리해나가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규제에 대한 납세자의 반응은 정책에 대한 납세자의 態度的受容(attitudinal acceptance)에 관련된 문제로서 규제정책의 성공여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罰則의 水準에 관한 문제는, 벌칙이 그 원인이 되는 조세회피 행위와 비교하여 일정 水準(threshold level)이상 부과되면, 租稅抵抗이라는 逆機能을 초래하게 되며, 반면 벌칙이 너무 낮으면 規制로서의 의미를 잃게 된다는 점에서 적절한 수준과 관련된 요소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는 Allingham, Sandmo, Srinivasan, Yitzahaki, Pencavel 등에 의해서 대표되는 分析的 研究方法과 다음에 소개하는 實證的 研究方法으로 나누어 진다. 實證的 研究方法은 그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Vogel, Spicer, Lundstedt, Song, Yarbrough 등에 의해서 주로 사용되는 survey에 의한 연구, Friedland, Maital, Lutenberg, Kaplan, Milliron 등의 實驗에 의한 연구, Clotfelter, Witte, Woodbury, Madeo, Schpenski, Vecker 등이 주된 연구자가 되는 實際의 所得資料를 이용한 回歸分析研究(regression modeling)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는 實證的 研究중 實驗的 研究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선정된 경제적, 비경제적 요소들이 조세회피성향과 벌칙의 수준책정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상황적 모형을 설정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行動的 研究에서의 이론개발과정은 우선 從屬變數와 獨立變數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형을 설정하고, 선정된 응답자의 구체적 행동적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설정된 모형의 관계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II. 租稅回避에 影響을 미치는 要素

租稅回避(tax evasion)란 租稅納付誠實性(tax compliance)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tax compliance에 대하여 IRS에서는 “국세청의 개입없이 납세자가 자신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기한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Jackson & Milliron, 1986) 租稅回避란 이와같은 租稅納付誠實性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데, 所得稅 申告를 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未達되게 신고하는 유형이 포함된다. 未達申告에는 收入金額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경우, 經費를

過多하게 計上하는 경우, 그리고 각종 控除金額(deductions)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된다.

既存의 연구에서 조세회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변수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변수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변수는 연구의 모형에 독립 변수 혹은 종속변수로 포함되도록 고안되었다.

<표 2-1> 조세납부성실도 선정된 변수와의 관계

연구방법	Survey연구				실험적연구				분석적연구 실제자료에대한연구					
	〈-----〉				〈-----〉				〈-----〉		〈-----〉			
연구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나이	0	+	0		+	0	0	+				+-	+	
性		+			-	+	0							
교육	0	-	+				0							+
소득수준	0		+	+		0	0	0	-		-	-	-	+
소득원천	0										+	+	+	+
準據集團	+	+	+	+										
조세윤리		0		+				+						
공평성	+		+	+			0	0						
복잡성		-					+-							
세무干涉	-		0											+
制裁	0				+				+				+	+
세무조사	0		+	+	+				+	+			+	
세율		0		-	-	-						-		-
정부신뢰도		+	+											

* 연구자는 다음과 같다.

- (1) = Spicer, Lundstedt (1976)
- (2) = Vogel (1974)
- (3) = Song, Yahrbrough (1978)
- (4) = Mason, Calvin (1984)
- (5) = Friedland, Maital, Rutenberg (1978)
- (6) = Spicer, Becker (1980)
- (7) = Milliron (1985)
- (8) = Kaplan, Reckers (1985)
- (9) = Allingham, Sandmo (1972)
- (10) = Yitzhaki (1974)
- (11) = Mork (1975)
- (12) = Clotfelter (1983)
- (13) = Witte, Woodbury (1985)
- (14) = Madeo, Schpenski, Uecker (1987)

* 여기서 +는 해당되는 요소의 크기의 증가에 따라 조세납부성실도가 증가한다는 뜻이고(-는 그 반대), 0은 그 결과가 확실치 않다는 뜻이다. 性의 경우 +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성실하다는 뜻이다. +와 -가 같이 표기된 것은 변수의 크기의 증가에 따라 성실도가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감소한다는 뜻이다. 소득의 원천에서 +는 원천징수되는 소득이 많을 수록 조세납부성실도가 증가한다는 뜻이다.

위의 변수들중에서 이론적 설명이 이루어지고있는 요소들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나이(age)

나이는 租稅納付誠實性과 대체로 陽의 相關關係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것은 나이가 많을수록 위험에 대한 태도가 보수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Clotfelter(1983)의 경우 가장 젊거나 가장 나이많은 집단이 높은 조세납부성실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나이와 조세회피사이에는 直線關係가 아닌 曲線關係가 존재하지않는가 하는 추정도 가능하다.

(2) 所得水準(income level)

소득수준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조사대상이 된 논문중 소득수준과 조세납부성실성이 陽의 相關關係를 가진다고 하는 연구가 3개, 陰의 相關關係를 가진다고 하는 연구가 4개, 相關關係가 명확치 않다는 연구가 4개임) 세율체계가 누진적인 점을 고려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게 되므로 조세회피의 성향을 높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效用의 측면에서 보면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低所得層의 경우 사회에 이해관계가 적고 명예의 손상등의 관점에서 잃을 것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가산세등을 부과한다고할 때, 화폐의 限界效用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는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분석적인 이론들이 어느 것일 옳은지 알 수 없지만 Witte 와 Woodbury(1985)는 실증적인 연구들이 서로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이유를 연구자들이 모델의 형태에 관한 검증없이 일률적으로 linear model을 사용하여 상관관계를 추정한 사실에서 찾고 있다.

(3) 所得의 源泉(source of income)

稅源捕捉이 용이한 소득은 그렇지 않은 소득에 비해서 조세납부성실성이 높아진다는 결론이 기존의 연구에서 일치하게 내려지고 있다. 그것은 源泉徵收(withholding)나 支給調書制度(information reporting)등과 같은 제도적 배경이 근로소득과 같은 소득의 徵收를 다른 소득에 비해서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의 종류는 조세회피의 중요한 說明變數라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4) 公平性(fairness)

公平性은 survey 연구에서는 租稅納付誠實性과의 陽의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으나, 實際所得 資料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이것이 거의 설명변수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연구에서 사용되는 公평성의 개념은 납세자 사이의 세금부담금이 垂直的 혹은 水平的으로 公평한가(vertical or horizontal equity)의 문제와, 납세자와 政府가 交換關係에 있다고 보고 납세자가 부담하는 稅金과 政府가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惠澤이 서로 衡平이 맞는가 하는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5) 制裁(sanctions)

기존의 연구는 벌칙이 강화될수록 租稅納付誠實度가 높아진다고 보고 하고 있다. 벌칙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하여 한가지 검토해야 할 점은, 일정한 수준(threshold level) 이상의 과중한 制裁가 가해지면 社會的 費用이 效益을 초과할 것이라는 점이다. 납세자들은 벌칙이 지나치다고 생각하게 되면 政府와의 격리되게되고 적대감과 법에대한 불신이 팽배하게 되기 때문이다.

(6) 稅務調査의 確率(audit probability)

실증적 연구나 분석적 연구를 포함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을 수록 租稅納付誠實性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와있고, 이 결과는 直觀的 觀察과 일치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監査를 받을 때는 기분이 불유쾌하거나 불안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작업이 비용이 들며 귀찮기 때문이다.

(7) 稅率(tax rates)

세율이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세율이 높을수록 租稅納付誠實性이 감소한다는 것이 경험적인 연구의 결과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비중을 두어서 연구한 사람은 Clotfelter인데, 限界稅率(marginal tax rate)과 租稅回避가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Clotfelter 1983), 그러나 부분적으로 이와 배치되는 결론도 제시되고 있다(Cox 1984).

(8) 政府에 대한 信賴度(trust in the goverment)

세금문제에 있어 납세자들이 정부를 신뢰한다는 것은 세금의 부담측면(burden of tax)과 아울러 징수한 세금의 支出側面(uses of tax)을 포함하는 의미를 가진다. 支出側面은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을 公평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출하는가 하는 문제로서 이러한 측면은 납세자가 정부로부터 受惠者의 입장에 서서 당연히 생각해 보는 요소이다. Sweden의 납세자들은 매우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Vogel 1974), 미국의 납세자들은 정부의 징수능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ong & Yarbrough 1978).

Ⅲ. 研究模型의 開發

현재 우리나라에는 조세회피를 연구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소득관계자료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現場實驗(field experiment)을 이용한 연구의 방법을 채택하였다.

3.1 從屬變數의 선정

종속변수로는 3가지가 선정되었는데 첫째는 租稅回避性向(propensity to evade)이 선택되었고, 둘째는 조세회피의 規制에 대한 納稅者의 反應이 선택되었고, 셋째는 罰則의 水準(level of penalties)이 선택되었다.

租稅回避 그 자체가 아닌 租稅回避性向을 조사하는 것은 답변의 왜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며, 규제에 대한 납세자의 반응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規制를 수용하지 않으면 規制政策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여러가지의 規制狀況에 대한 납세자들의 반응을 조사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세번째의 變數인 벌칙은 가장 租稅抵抗을 유발하기 쉬운 변수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서는 의도된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포함되었다.

3.2 獨立變數의 선정

租稅回避에 관련된 설명변수는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租稅回避問題의 성격이 경제적 요소와 아울러 비경제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독립변수의 구성에 이러한 입장을 반영시키기로 하였다.

독립변수는 實驗變數(experimental variable)와 追加調査事項(background variable)으로 구성되었다. 실험변수는 연구의 설계상 연구자가 의도하는 實驗的 操作이 가능한 변수를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변수의 數를 3 개, 각 변수마다 연구자가 부여할 수 있는 水準의 數를 2개로 하여 그 결과 만들어진 시나리오는 8개 ($2 \times 2 \times 2 = 8$)가 되었다. 만약 水準의 數를 3개로 높이

면 제세되는 事例의 數가 27개 ($3 \times 3 \times 3 = 27$)가 되고, 변수의 數를 4개로 늘리게 되면, 事例의 數가 16개 ($2 \times 2 \times 2 \times 2 = 16$)가 되어 實驗計劃이 지나치게 복잡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3개의 실험변수는 所得水準(income level), 所得稅率(tax rate), 政府에 대한 信賴度(trust in the government)로 선정하였다. 소득수준과 세율은 경제적 변수이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非經濟的 變數이다. 이러한 세가지 변수가 실험변수로 선정된 이유는 기존의 연구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세금문제의 行動的 側面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인 요소와 아울러서 비경제적인 요소를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소득수준에 따라서 사람의 행태가 달라진다면 세율체계에 따라서 납세자의 판단이 달라진다고 보고하고 있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두가지 요소가 경제적인 요소로 포함되었다. 또한 조세회피의 비경제적인 측면을 설명하는 요소중에서 정부의 신뢰도가 포함된 것은, 기존의 연구결과와 아울러서 납세자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불공평한 정부가 조세회피라는 현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해보고자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追加調査事項은 실험변수에 포함되지 못한 변수중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고 싶은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추가조사사항에 포함된 변수로는 나이, 응답자가 認知하는 稅務調査의 程度, 稅制의 公正성에 대한 인식도, 응답자가 인지하는 租稅回避에 대한 倫理的 態度, 응답자가 인지하는 우리나라의 조세회피정도의 5개 항목이다.

3.3 假說의 설정

앞에서 논의된 이론들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 검증할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假說 1: 所得水準에 대한 假說)

假說 1-1: 소득수준이 높은 납세자일수록 조세회피의 성향은 증가한다.

假說 1-2: 소득수준이 높은 납세자일수록 조세회피의 규제에 대한 납세자의 태도는 저항적이다.

假說 1-3: 사람들은 소득수준이 높은 납세자의 조세회피에 대하여 높은 벌칙을 부과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한다.

소득수준이 증가한다면, 稅率體系가 누진적인 점을 고려할 때, 조세회피의 효과는 증가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조세회피성향은 所得이 增加할수록 높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경제이론의 입장에서 보면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화폐의 限界効用的 觀點에서 생각하면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화폐의 상대적가치는 감소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는 소득수준이 增加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의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조세회피에 대한 規制는 적은 액수의 세금을 내는 低所得 納稅者에 비해서 조세저항을 많이 받을수 있다. 즉 高所得 納稅者는 마음속으로 불평을 하거나 세무서에 로비를 하든지 세법의 개정을 추진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소득의 限界効用的 觀點에서 반대의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저소득층은 규제의 결과 가산세등을 부과한다고 할 때 벌금의 한계효용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規制에 대하여 저항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소득자의 조세회피에 대하여 저소득자보다 더 엄격하게 처리하고자 할 것이다. 이 점은 세금의 負擔基準이 擔稅能力(ability to pay)으로 채택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일반적인 기준을 크게 위배하는 사람에게 더 큰 벌칙을 부과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假說 2 : 所得稅率에 대한 假說)

假說 2-1 : 소득세율체계가 높은 상황에 처한 납세자들은 낮은 상황에 처한 납세자에 비해서 높은 조세회피성향을 보인다.

假說 2-2 : 소득세율체계가 높은 상황에 처한 납세자들은 낮은 상황에 처한 납세자에 비해서 규제에 대하여 저항적인 태도를 취한다.

假說 2-3 : 사람들은 소득세율체계가 높은 상황에 처한 납세자들의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낮은 경우에 비해서 관대한 벌칙을 부과하고자 한다.

세율이 증가하면 조세회피성향이 증가한다는 것은, 같은 소득을 가졌다 하더라도 세율이 높으면 많은 세금을 내야하고, 따라서 납세자는 세금을 적게 내고자하는 노력을 하게될 것이라는 논리에 기초한 것이다.

稅率體系가 높을 때에는 납세자들은 세율이 낮을 때에 비해서 높은 세금을 내게 되므로,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과 稅務行政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같은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不滿이 팽배해 있는 높은 세율체계하에서는, 낮은 세율의 경우 보다는 規制를 회피하고자 하는 보다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반면, 사람들은 소득세율체계가 높은 경우의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의 경우보다는 조세회피자에 대한 配慮의 수준이 높아져서 관대한 벌칙을 부과하고자 할 것이다.

(假說 3 : 政府의 信賴度에 대한 假說)

假說 3-1 : 정부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조세회피성향은 감소한다.

假說 3-2 : 정부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규제에 대한 납세자의 태도는 수용적이다.

假說 3-3 : 사람들은 정부의 신뢰도가 높은 상황에서의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 비해서 엄격한 벌칙을 부과하고자 한다.

납세자들이 부담한 세금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支出이 의미없는 방식으로 사용된다고 할 때, 납세자들은 세금을 회피하고자 할 것이다. 이 점은 政府와 脫稅者와의 관계를 交換關係라고 볼 때,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댓가로 정부로부터 별로 받을 것이 없는 경우가 되고, 납세자는 이러한 不均衡을 해소하는 한 방편으로 조세회피를 택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 대한 納稅者의 信賴度가 높으면, 같은 논리로 조세회피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여기서의 정부의 신뢰도는 공평성(fairness)의 개념에 포함된다. 그러나 공평성은 연구자에 따라 대단히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중 한가지 개념인 교환관계(tradeoff relationship)를 채택하였다. 즉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과 정부가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형평이 맞으면 “공평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변용환, 1990)

납세자의 규제에 대한 태도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受容的이라고 가정되었다. 납세자의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도는 평균이상의 惠澤을 납세자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이러한 상황하에서 부과되는 규제는, 정부가 신뢰받지 못하는 경우에서의 규제보다는 더 수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罰則의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신뢰도가 낮을 경우 납세자들은 정부에 대해서 不滿을 가지게 되고, 사람들은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 보다 寬大한 벌칙을 부과하고자 할 것이다. 정부의 신뢰도가 높으면 같은 논리로 處罰基準이 엄격해질 것이다.

IV. 實證的 研究의 分析結果

租稅回避에 관한 실증적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지만 그것은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한 서구의 선진국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우리 나라의 租稅政策樹立에 이러한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문화적, 경제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배경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조세회피에 관련된 납세자의 態度 및 意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샘플의 수와 실험참가자의 稅務經驗이라는 요소를 고려하였고, 납세행위에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연구범위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기존의 주요 실험적 연구와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4.1 자료의 蒐集

4.1.1 標本의 추출

본 연구의 대상표본을 선택하는데 있어, 연령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年齡層을 대상으로하여, 다양한 業種에서 표본을 추출하였다. 피실험집단의 선정은 반응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지역의 급여생활자에 한정되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자영업자(self-employed)와 급여생활자의 조세회피행태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자영업자의 sample을 얻기가 대단히 어렵고 그들의 실제행동과 단순한 의견은 다를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 연구에서는 제외되었다.

실험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험참가자에게 참가의사를 묻고, 수락할 경우에 한해서 설문서를 수고료와 함께 배부하였다. 서로다른 조직에서 sampling한 것은 randomize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sample들은 업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는 급여생활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반응의 동질성(homogeneity)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실험적 연구에서 실험참가자의 적정 數는 실험의 반복회수와 관련을 가진다. (표본의 수=실험참가자의 수

×실험의 반복회수) 본 연구에서는 이와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실험의 반복회수를 8회, 실험참가자의 수는 81명으로 결정되었다. (總 標本數는 648개) 실제 추출한 표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업 종	대상기업	배부부수	회수부수	유효부수
제조업	A 식품	8	7	5
금융업	B 은행	10	10	10
"	C 종합금융	10	9	6
"	D 보험	15	14	13
무역업	E 상선	20	18	18
전문직	F 회계법인	25	23	18
"	G 회계사무소	13	6	6
"	H 대학교	7	7	5
	총 계	108	94(87.0%)	81(75.0%)

4.1.2 設問의 構成과 分析方法

4.1.2.1 獨立變數의 構成

한개의 설문지에는 8개의 사례가 포함되어있다. 그것은 실험변수(experimental variable)로 선정된 소득수준, 소득세율, 정부의 신뢰도에 대하여 각각 2개의水準(levels)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실험변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所得水準의 경우 高所得者는 연간 순소득이 4,500만원, 低所得者는 연간 순소득이 1,800만원으로 제시되었고, 所得稅率의 경우 높은 세율은 平均所得稅率이 30%, 낮은 세율은 평균 소득세율이 15%로 제시되었고, 정부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있는 정부는 정부투자자의 優先順位와 投資效率에 있어, 그렇지 못한 정부와의 신뢰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독립변수들은 공통적으로 3개의 종속변수의 설명변수로 채택되고 있다. 이에대한 논리적 근거는 다

을 節(2. 자료의 분석)에서 매 경우마다 제시되고 있다. 한편 기타의 변수들은 이와같은 논리적 연관관계가 사전에 주어지지않고 있다. 그것은 위의 3가지 변수로는 조세회피에 관련된 행위를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기때문에 기존의 문헌에서 언급하는 요소중 우리 나라 납세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설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포함된 것이다. 실험계획에 포함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순소득 1800 만원,	세율 15%,	신뢰성 없는 정부
(사례 2) 순소득 4500 만원,	세율 15%,	신뢰성 있는 정부
(사례 3) 순소득 4500 만원,	세율 30%,	신뢰성 없는 정부
(사례 4) 순소득 1800 만원,	세율 15%,	신뢰성 있는 정부
(사례 5) 순소득 4500 만원,	세율 30%,	신뢰성 있는 정부
(사례 6) 순소득 1800 만원,	세율 30%,	신뢰성 없는 정부
(사례 7) 순소득 4500 만원,	세율 15%,	신뢰성 없는 정부
(사례 8) 순소득 1800 만원,	세율 30%,	신뢰성 있는 정부

이와같이 작성된 8개의 사례에 대하여 공통적인 사항은 사례속의 가상의 납세자는 자영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종합소득신고시에 납부해야 될 세금중 220만원 만큼을 적게 신고, 납부하였다는 사실이다. 이 금액은 사례에 의하여 주어진 납부세금의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선정된 것이다.

4.1.2.2 從屬變數의 구성

종속변수는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선정되었다.

첫째는 租稅回避性向으로서 응답자가 각 사례속의 인물과 같은 행동(조세회피)을 할 의사가 어느 정도인지를 5단계의 Likert 응답유형에 따라 답변할 수 있도록 질문하였다.

둘째는 조세회피의 規制에 대한 납세자의 태도를 묻는 질문으로서, 응답자는 주어진 상황에서 어떠한 반응을 나타낼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요구되었다. 선택할 수 있는 반응은 制裁를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강력하게 반발하는 5가지로 제시되었다.

셋째는 조세회피에 대한 處罰 문제인데, 응답자들은 假想의 조세회피 사례에 대하여 자신이 생

각하는 적절한 벌칙을 부과하도록 요구되었다. 여기서 제시된 벌칙은 가벼운 가산세로부터 일정 기간의 拘留에 이르기까지 5종류가 제시되었다. 여기서는 조세회피에 대한 처벌을 벌금내지는 體刑에 국한시키고 있다. 기존의 경제학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세무조사가 채택되지 않은 이유는 세무조사의 확률(audit rate)을 피실험자들이 피부에 느낄수 있도록 조작하는것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조사의 확률을 1% point 높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 것이지만, 납세자들의 의사결정에 1% point의 변동은 차이를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4.1.2.3 追加調査事項

實驗變數이외에도, 기존의 문헌에서 언급된 다른 변수들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추가조사사항의 형식으로 포함되었다. 다섯가지가 이에 포함되었는데, 應答者의 연령, 認知된 稅務行政의 公平性, 인지된 稅務調査의 확률, 租稅回避에 대한 윤리적 태도 및 인지된 다른 납세자의 租稅回避 程度등이 그것이다.

4.1.2.4 變數測定の 信賴度 分析

종속변수인 조세회피성향과 規制에 대한 納稅者의 態度, 그리고 벌칙의 수준에 대하여, 앞에서 언급한 8개의 實驗計劃의 측정평균치의 標準偏差(stsnd errors of the mean judgements)가 계산되었는데, 그 결과는 평균 측정치가 95% 신뢰구간안에 있는 것이 확인 되었다 (Kerlinger, 1986, pp.404-415).

4.2 資料의 分析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4.2.1 稅務回避性向을 설명하는 變數에 대한 檢證

종속변수가 조세회피성향인 경우에 回歸分析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독립변수	beta 계수	F 값
소득수준	-0.3079	102.662**
소득세율	0.2432	64.056**
정부의 신뢰도	-0.4923	262.478**
응답자의 연령	0.0227	0.532
인지된 세무행정의 공정성	-0.1018	10.347*
인지된 세무조사의 확률	0.0631	4.091*
조세회피에 대한 윤리적 태도	0.0204	0.438
인지된 다른 납세자의 조세회피정도	-0.0381	1.494

* 유의 수준 0.05

** 유의 수준 0.01

4.2.1.1 가설 1-1에 대한 檢證

beta 계수 -0.3079 유의수준 0.01

가설 1-1은 소득수준이 높은 납세자의 조세회피성향이 소득수준이 낮은 납세자의 조세회피성향보다 높다는 것이다. 위의 결과에 따르면 이 가설은 강하게 기각된다. 이것은 화폐의 限界効用의 관점에서 220만원이라는 조세회피금액은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에게 效用이 더 크므로 저소득자가 더욱 큰 조세회피의 유인을 갖게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한가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본 연구의 實驗參加者들의 실제소득이 여기서 제시한 고소득자(연소득 4500만원) 보다 저소득자(연소득 1800만원)에 더 가깝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실험의 상황설정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자를 옹호하는 응답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즉 저소득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고소득의 문제를 타인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4.2.1.2 가설 2-1에 대한 檢證

beta 계수 0.2432 유의 수준 0.01

가설 2-1은 所得稅率體系가 높은 상황에서의 조세회피성향이 낮은 상황에서의 조세회피성향보다 높다는 것이다. 위의 결과에 따르면 이 가설은 강하게 지지되고 있다. 이것은 기대한 것처럼

럼, 같은 소득을 가졌다 하더라도 세율이 높으면 많은 세금을 내야하고, 따라서 납세자는 세율이 높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자하는 性向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준다.

4.2.1.3 가설 3-10에 대한 검증

beta 계수 -0.4923 유의 수준 0.01

假說 3-1은 정부의 신뢰도가 높은 경우는 낮은 경우에 비해서 租稅回避性向이 낮다는 것이다. 위의 결과에 따르면 이 가설은 강하게 지지된다. 이것은 기대한 것처럼 납세자는 정부와의 관계를 交換關係에서 파악하고, 납부한 세금이 납세자의 효용이 높은 부분에 사용될 때, 租稅回避性向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일치하고 있다.

4.2.1.4 追加調査事項에 대한 검증

追加調査事項중에는 인지된 세무행정의 公평성과 稅務調査의 確率이 중요한 설명변수로 나타났다. 먼저 인지된 세무행정의 公평성에 대한 응답결과는 beta 계수가 -0.1018, 유의수준이 0.05로 나타나, 세무행정이 公평하다고 생각할수록 조세회피성향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公正한 세무행정의 시행이 조세회피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인지된 세무조사의 확률에 대한 응답결과는 beta 계수가 0.0631, 유의수준이 0.05로서 나타났는데, 이것은 국세청이 稅務調査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납세자일수록 조세회피성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결과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배치되는 결론이다.

위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자 한다. 즉 응답자들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국세청의 세무행정의 公평성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의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대체로 抵抗의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이 조사가 실제 조세회피를 한 사실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여건하에서 조세회피의 意向을 묻는 조사이기 때문에 세무행정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여건하에서는 오히려 세무조사의 확률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租稅回避性向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稅務調査가 갖는 의미때문에 생겨날 수 있다. 세무조사는 순수한 의미에 있어서의 脫稅를 적발하는 것이외에, 비판적이거나 정부에 비협조적인 납세자에 대한 政治

的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온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4.2.2 規制에 대한 納稅者의 반응을 설명하는 變數에 대한 檢證

從屬變數가 규제에 대한 납세자의 반응인 경우에 回歸分析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독립변수	beta 계수	F 값
소득수준	-0.2092	41.777**
소득세율	0.2253	48.451**
정부의 신뢰도	-0.4720	212.650**
응답자의 연령	0.0135	0.166
인지된 세무행정의 공정성	-0.0486	2.077
인지된 세무조사의 확률	0.0958	8.292*
조세회피에 대한 윤리적 태도	0.0509	2.389
인지된 다른 납세자의 조세회피정도	0.0169	0.259

주 : * 유의 수준 0.05

** 유의 수준 0.01

4.2.2.1 假說 1-2에 대한 檢證

beta 계수 -0.2092 유의수준 0.10

가설 1-2는 높은 소득을 가진 납세자에 비해서 조세회피의 규제에 대하여 抵抗的인 태도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위의 결과에 따르면 이 가설은 강하게 棄却되고 있다. 그것은 5단계로 나누어진 측정척도의 값이 커질수록 규제에 대하여 저항적인 태도를 나타내도록 설계 되었기 때문이다.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많은 액수의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시행되는 조세회피의 규제는 적은 액수의 세금을 내는 저소득 납세자에 비해서 더 큰 저항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되었으나, 위에서는 이러한 理論에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납부하는 세금의 絕對額 보다는 상대적인 효용이 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해준다.

4.2.2.2 假說 2-2에 대한 檢證

beta 계수 0.2253 유의수준 0.01

가설 2-2는 높은 소득세를 체계하에서는 낮은 소득세율체계에 비해서 조세회피의 規制에 대해서 납세자들은 저항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위의 결과는 이 가설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租稅納付誠實性(tax compliance rate)가 稅率의 증가와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세율이 높을 때의 규제에 대해서는 낮을 때 보다도 더 저항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기대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4.2.2.3 假說 3-2에 대한 檢證

beta 계수 -0.4720 유의수준 0.01

가설 3-2는 정부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규제에 대한 납세자의 태도는 受容的이라는 것이다. 위의 결과는 이러한 사실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이것은 규제에 대한 납세자의 태도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로서 47%의 설명력을 가진다.

政府의 信賴度는 세율이나 소득수준등의 경제적 변수보다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非經濟的 변수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면, 납세자들은 대부분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재의 공평한 효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부과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의 규제보다는 훨씬 저항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위의 결과는 말해주고 있다.

4.2.2.4 追加調查事項에 대한 檢證

추가조사사항 중에는 인지된 세무조사의 확률이 중요한 설명변수로 나타났는데, beta계수는 0.0958이며 유의수준은 0.05이다. 이것은 세무당국이 세무조사를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납세자일수록 규제에 대하여 抵抗의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세무당국이 세무조사를 많이 할수록 실제 租稅回避行爲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납세자들의 의식은 보다더 抵抗의으로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는 세무당국이 규제정책을 입안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4.2.3 罰則의 水準을 결정하는 變數에 대한 檢證

從屬變數가 조세회피에 대한 벌칙의 수준인 경우에 回歸分析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	beta 계수	F 값
소득수준	0.2983	82.600**
소득세율	-0.1890	33.157**
정부의 신뢰도	0.3542	116.465**
응답자의 연령	-0.1541	20.261**
인지된 세무행정의 공정성	0.1593	21.716**
인지된 세무조사의 확률	-0.0377	1.253
조세회피에 대한 윤리적 태도	-0.0575	2.977
인지된 다른 납세자의 조세회피정도	0.1542	20.964**

주: ** 유의 수준 0.01

4.2.3.1 假說 1-3에 대한 檢證

beta 계수 0.2983 유의수준 0.01

가설 1-3의 내용은 사람들이 높은 소득을 가진 납세자의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낮은 소득을 가진 납세자보다도 무거운 罰則을 부과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위의 결과는 이와같은 가설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사람들은 보통 고소득자의 조세회피에 대하여 더 엄격한 기준을 채택하리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세금의 부담기준이 擔稅能力에 근거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이러한 기준을 더 크게 위반하는 사람(여기서는 고소득자)에게 더 큰 벌칙을 부과할 것이라는 기대와 일치하고 있다.

4.2.3.2 假說 2-3에 대한 檢證

beta 계수 -0.1890 유의수준 0.01

가설 2-3은 높은 소득세율체계에서는 낮은 경우에 비해서 가벼운 罰則을 부과하는 것을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것이다. 위의 결과는 이러한 가설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稅率이 높을 때는 조세저항이 높아져서, 租稅回避行爲者에 대한 配慮의 수준이 높아지므로 벌칙의 수준이 낮게 부과될 것이라는 기대와 일치한다.

4.2.3.2 假說 2-3에 대한 檢證

beta 계수 0.3542 유의수준 0.01

가설 3-3은 사람들이 政府의 信賴度가 높은 상황에서의 조세회피에 대하여는 낮은 경우보다 무거운 벌칙을 부과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위의 결과는 이러한 가설을 강하게 支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정부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납세자들은 政府로부터 공급되는 각종 서어비스에 대하여 만족하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관계를 저해하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기대와 일치하고 있다.

4.2.3.4 追加調査事項에 대한 檢證

추가조사사항중 응답자의 연령과 인지된 세무행정의 공평성, 그리고 인지된 다른 납세자의 조세회피정도가 중요한 설명변수로 나타났다.

먼저 응답자의 연령은 beta 계수가 -0.1514 이며, 유의수준 0.01로서 연령이 높을수록 벌칙을 낮게 부과하는 행동양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세대차(generation gap)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나이가 많을 수록 과격한 처벌을 싫어하고 가산세를 중심으로 하는 온건한 벌칙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은 조세회피성향이나 규제에 대한 납세자의 반응에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벌칙의 부과에 있어서는 높은 설명력을 가진 변수로 나타남으로서 조세문제의 정책입안자들이 규제에 대한 정책을 고안할 때, 납세자들의 연령과 벌칙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지된 세무행정의 공평성은 beta계수 0.1593 이며 유의수준 0.01로서, 세무행정이 공평하다고 생각할수록 罰則을 높게 부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연구들 (Spicer & Lundstedt 1976; Song & Yarbrough 1978; Mason & Calvin 1984)에서 公平性과 租稅納付誠實性(tax compliance rate)이 비례한다는 것을 발견한 것과 관련이 있다. 공평한 세무행정

이 있는 곳에서는 높은 租稅違法性이 있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높은 罰則이 부과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認知된 다른 납세자의 租稅回避는 beta계수 0.1542이며, 유의수준 0.01로서 다른 납세자들이 조세회피를 많이 한다고 인식할수록 높은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조세회피가 만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납세자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조세회피의 주된 행위자가 自營事業者인 점을 고려할 때, 그들의 조세회피에 대하여 무거운 벌칙을 통하여 엄격한 관리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를 종속변수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이에 내포된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所得水準에 관하여 나타난 결과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租稅政策의 立案이나 規制의 實行에 있어서, 초점은 고소득자의 조세회피문제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저소득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세회피의 기회 자체가 제한되고 있고, 또한 조세저항이 강하게 나타나서 稅務行政의 집행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점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납세자들은 고소득자의 조세회피에 더 높은 벌칙을 부과하는 것을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富(wealth)의 정당성이 아직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세무당국의 高所得者에 대하여 정당한 과세를 하고 있다는 점을 납세자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租稅納付誠實性(tax compliance rate)을 높이는 데 유효한 방법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추가조사 사항에서 국세청의 행동이 垂直的 公平性(vertical equity)에 공헌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납세자들이 대단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과도 일치하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所得稅率과 관련된 연구결과는 소득세율을 높게 책정하는 정책을 再考하도록 요청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세원의 捕捉率이 높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것은 조세회피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다, 모든 금융기관의 이용이 假名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非

實名 자기앞수표가 현금과 같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附加稅 稅金計算書에 주로 의존하는 현재의 방식으로 조세회피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현실과 관련하여, 소득세율을 높게 책정하면 조세회피가 증가하고 납세자들의 규제에 대한 태도가 저항적이 되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높은 벌칙은 收容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의 중요한 정책변수의 하나인 소득세율은 허용되는 범위까지 낮아지는 것이, 높은 租稅納付誠實性을 유지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부득이한 경우 소득세율의 상승은 稅源捕捉率의 증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稅率의 상승은 조세회피의 증가에 의하여 그 효과가 감소될 것이며, 이른바 同時誤謬(simultaneous bias)를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한편 政府의 信賴度는 본 연구에서는 政府投資의 效率的 執行으로 정의한 바, 이 요소는 所得水準이나 稅率에 비하여 대단히 높은 일치된 반응을 보였다. 이 사실은 조세회피의 문제가 國稅廳만의 문제가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정부 전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것을 뜻한다. beta 계수로 표현하자면 정부의 신뢰도가 租稅納付誠實性에 미치는 효과는 대략 소득수준과 세율이 미치는 효과를 합친 것과 비슷하거나 약간 미달되는 수준이다.

세금의 문제는 經濟的인 문제이고, 납세자들은 현금의 지출에 대단히 민감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러한 범주내에서만 문제를 생각하는 방식은 非經濟的인 요소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정부의 모든 정책의 입안과 시행이 여론의 수렴하에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조세회피를 감소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追加調査事項에 대한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稅務調査의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납세자일수록 규제에 대하여 抵抗的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납세자들이 세무행정에 대하여 불신을 나타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稅務調査에 대한 반발 심리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세무조사가 순수한 탈세를 조사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비협조적인 납세자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것도 한가지 원인으로 생각된다.

세무조사의 確率에 관해서는, 확률이 높을수록 규제에 대한 납세자의 반응이 저항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요한 정책변수중의 하나인 세무조사가 副作用을 수반한다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를 당하는 납세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빼앗기게 되며, 稅務行政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게 된다. 따라서 세무당국은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해서만 신중하

계 세무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미국 국세청이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 세무조사대상자 選定公式(audit formula)의 개발을 위한 노력이다. 충분한 標本(taxpayers)을 선택하여 세무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所得階層別, 地域別, 職業別등의 等級(audit class)으로 분류하여 세무조사를 위한 설명력있는 변수를 확인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다. 이것은 앞으로의 稅務調查對象者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선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며, 세무조사에 따르는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또한 본 연구는 규제의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인 벌칙에 관한 정책입안시에 납세자들의 年齡 및 조세행정에 대한 인식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 및 앞으로의 연구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실험적 연구의 경우 실험의 통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實驗室 實驗(laboratory experiment)이 유효한 방법이다. 조세회피문제는 실험참가자가 납세경험이 있는 경우, 보다 현실적인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험실 실험방법에서 실험참가자가 학생집단이 될 경우에, 조세회피 의사결정문제와 같이 납세경험을 요구하는 경우, 이상적인 실험이 되기가 어렵다. 반면 現場實驗(field experiment)은 경험있는 납세자를 응답자에 포함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작업장의 산만한 분위기 때문에 실험의 통제력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방법론상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실제 조세회피행위를 나타내는 소득자료를 이용해서 연구할 수 있다면, 보다 진실에 가까운 결론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연구는 美國 國稅廳이 제시한 TCMP(Tax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 국한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된 조세회피의 중요한 설명변수를 實驗計劃의 복잡성때문에 모두 검토하지는 못하였다. 먼저 性(sex)에 관한 문제인데, 앞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난다고 볼 때, 여성의 조세회피문제가 남성과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職種이나 學力의 차이, 근로소득자와 自營事業者의 조세윤리 및 납세행위의 차이, 혹은 지역이나 사회적 지위의 차이, 종교의 영향등은 앞으로 survey 조사등을 통하여 연구해 볼만한 변수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들은 곧 본 연구의 한계점이자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Allingham, M. and A. Sandmo, "Income Tax Evasion :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November 1972), pp.323-338.
2. Clotfelter, C. T., "Tax Evasion and Tax Rat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August 1983), pp.363-373.
3. Cox, D., "Raising Revenue in the Underground Economy," *National Tax Journal*, (September 1984), pp.283-288.
4. Friedland, N., S. Maital, and A. Rutenburg, "A Simulation Study of Income Tax Evas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987, pp.107-116.
5. Grates, M. J. and L. L. Wilde, "The Economics of Tax Compliance : Fact and Fantasy," *National Tax Journal*, (September 1985), pp.355-363.
6. Jackson, B. R. and V. C. Milliron, "Tax Compliance Research : Findings,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1986, pp.125-165.
7. Kaplan, S. E. and P. M. Reckers, "A Study of Tax Evasion Judgements," *National Tax Journal*, (March 1985), pp.97-102
8. Kerlinger, F. N., *Foundations of Behavioral Research*, third ed., Holt, Rinehart and Winston Co., 1986, pp.404-415.
9. Lewis, A., "An Empirical Assessment of Tax Mentality," *Public Finance*, 1979, pp.245-257.
10. Madeo, S. A., A. Schpenski, and W. C. Uecker, "Modelling Judgements of Taxpayer Compliance," *The Accounting Review*, (April 1987), pp.323-342.
11. Mason, R. and L. D. Calvin, "Public Confidence and Admitted Tax Evasion," *National Tax Journal*, (December 1984), pp.489-496.
12. Mork, K. N., "Income Tax Evasion : Some Empirical Evidence," *Public Finance*, 1975, pp.70-76.
13. Schpenski, A., "The Predictive Ability Criterion in Experimental Judgement Research in Accounting," *Decision Sciences*, (July 1983), pp.581-599.

14. Skinner, J. and J. Slemrod, "An Economic Perspective of Tax Evasion," *National Tax Journal*, (September 1985), pp.345-353.
15. Song, Y. and T. E. Yarbrough, "Tax Ethics and Taxpayer Attitudes : A Survey," *Public Administrations Review*, (September/October 1978), pp.442-452.
16. Spicer, M. W. and L. A. Becker, "Fiscal Inequity and Tax Evasion : an Experimental Approach," *National Tax Journal*, (June 1980), pp.171-175.
17. Spicer, M. W. and S. B. Lundstedt, "Understanding Tax Evasion," *Public Finance*, 1976, pp.295-305.
18. Srinivasan, T. N., "Tax Evasion : a Model,"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2, 1973, pp.339-346.
19. Vogel, J., "Taxation and Public Opinion in Sweden : An Interpretation of Recent Survey Data," *National Tax Journal*, (December 1974), pp.499-513.
20. Witte, A. D. and D. F. Woodbury, "The Effect of Tax Laws and Tax Administration on Tax Compliance :The Case of the U. S. Individual Income Tax," *National Tax Journal*, (March 1985), pp.1-13.
21. Yitzhaki, S., "A Note on Income Tax Evasion :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3, 1974, pp.201-202.
22. 변용환, "조세공정성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기준,"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0, pp. 45-56.

